



가

[시행 2018. 1. 22] [국방부령 제948호, 2018. 1. 22, 일부개정]

국방부 (인력관리과) 02-748-5131

- 1 () 이 규칙은 「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 [전문개정 2011. 8. 1.]
- 2 () ① 육군·해군·공군(해병대를 포함하며, 이하 “각군”이라 한다) 참모총장(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, 이하 “각군 참모총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 ② 제1항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 1. 선발 인원 및 소요 예산
 2. 선발 방법 및 선발 시기
 3. 교육기관, 교육과정, 전공 분야 및 수학연한(修學年限)
 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[전문개정 2011. 8. 1.]
 [제목개정 2018. 1. 22.]
- 3 (가)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전형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8. 1. 22.>
 ② 제1항에 따른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 [전문개정 2011. 8. 1.]
 [제목개정 2018. 1. 22.]
- 4 ()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 실시 30일 전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 [전문개정 2011. 8. 1.]
- 5 () 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 1. 별지 제2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서약서 1부
 2. 구청장·시장·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1부
 3. 성적증명서(신입생은 입학성적을 말한다) 및 서열 명부 각 1부
 4. 학교장 추천서 1부
 5. 별지 제3호서식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
 6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
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1.]

6 () ① 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신체검사, 면접, 그 밖의 전형을 실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위한 추천을 한다. 다만,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22.>

②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,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
③ 국방부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
[전문개정 2011. 8. 1.]

[제목개정 2018. 1. 22.]

7 ()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, 퇴학, 선발취소 등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다만, 「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22.>

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하되, 그 결원 전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같은 학년의 재학생 중에서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
[전문개정 2011. 8. 1.]

8 () 국방부장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, 각군 참모총장은 위촉된 학교(이하 “협약학교”라 한다)의 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.

1. 목적
2.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에 관한 사항
3.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과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사항
4.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
5.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학업성적, 상벌,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
6.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통보와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8. 1. 22.]

9 삭제 <2018. 1. 22.>

10 () ① 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. 22.>

1. 학교가 폐쇄되거나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교육과정이 폐지된 경우
2.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
3. 군의 인력 조정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지된 학교에 재학 중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. 다만,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
<개정 2018. 1. 22.>

[전문개정 2011. 8. 1.]

- 11 ()** ① 영 제7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고등교육법」 제 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. <개정 2014. 12. 31., 2018. 1. 22.>
- ② 협약학교의 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부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총괄표를 작성·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- ③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- [전문개정 2011. 8. 1.]
[제목개정 2018. 1. 22.]
- 12 ()**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“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”은 수학 기간 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 이상 또는 성적 서열이 100분의 5 이내인 사람으로 하며, 영 제13조제3호에 따른 “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”는 학기 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다.
- [전문개정 2011. 8. 1.]
- 13 ()** ①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 6개월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- ②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(면제)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반납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 1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- [전문개정 2011. 8. 1.]
[제목개정 2018. 1. 22.]
- 14 ()**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6. 6. 17., 2018. 1. 22.>
1. 사망한 경우
 2.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자연재해나 전상(戰傷)·공상(公傷)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
 3.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「군인사법」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
 4. 개인의 고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
- [전문개정 2011. 8. 1.]
- 15 ()**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-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.
1. 귀향처분을 받은 후 다음 입영일이 최초 신체검사일부 12개월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.
 2. 최초 신체검사일부 9개월이 지난 후 다시 입영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, 치유기간이 최초 신체검사일부 12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.
 3.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
[전문개정 2011. 8. 1.]

16 ()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본인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
[전문개정 2011. 8. 1.]

[제목개정 2018. 1. 22.]

17 () 각군 참모총장은 매학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취학, 선발취소 및 졸업인원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. 22.>

[전문개정 2011. 8. 1.]

18 ()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1.]

<제948호, 2018. 1. 22.>

1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2호 및 제18조제5호 중 “군장학생”을 각각 “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”로 한다.

②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 제목 “(군장학생 선발자의 통보 및 입영 등)“을 “(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통보 및 입영 등)“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군장학생규정」에 따라 군장학생을“을 “「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」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“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군장학생으로“를 각각 “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“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군장학생으로서“를 “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“로 한다.

③ 의무·법무·군종·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「군장학생규정」”을 “「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」”으로, “군장학생(軍獎學生)”을 “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”로 한다.